

연결재무제표와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 우리나라 연결회계제도에 대한 고찰*

이 창 우**

〈目 次〉

- | | |
|----------------------------------|----------------------------------|
| I. 서론 | 3. 연결재무제표기준 및 준칙의
개정내용에 대한 분석 |
| II.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 | IV.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논의 |
| 1. 연결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 1.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 |
| 2. 연결재무제표기준에 대한 연구 | 2.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에
대한 토론 |
| III. 연결재무제표기준 및 준칙의
개정내용 및 분석 | V. 결 론 |
| 1.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개정내용 | 1.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
| 2. 연결재무제표준칙의 개정내용 | 2.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
논의에 대하여 |

I. 서론

미국회계학회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사에 지배력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들의 경영활동과 자원을 통제하고 있을 때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유용한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둘 이상의 관련된 회사를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가정하고 그 통합된 실체의 단일 경영지배력하에 있는 경영활동을 나타내고 자원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가 연결재무제표인 것이다. 이같이 '두 개 이상의 기업 또는 그 기업들의 순자산이 동일한 통제하에 포함되어 하나의 회계실체로 되는 사건 또는 거래'¹⁾를 기업결합이라고 한다. 기업결합은 하나 이상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자신의 순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관련되는 각 회사가 새로이 성립된 회사

* 이 논문은 1993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1)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Discussion Memorandum, 'An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 and Purchased Intangible', 1976, para. 11.

에 순자산을 이전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 거래들을 회계학의 관점에서 보면 연결의 문제와 영업의 양수도 또는 합병의 문제가 되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은 기업결합의 한 형태인 지배, 종속의 관계를 결합하는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결합 중 합병은 관련된 회사가 법률적인 독립성을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실체를 이루는 것이며 이같이 관련된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들은 합병시점에서 한번 결합되는 것으로서 회계상처리가 종료가 된다. 그러나 연결의 경우에는 관련회사들의 법적인 실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마다 개별재무제표를 합산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같이 서로 관련된 개별회사들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이 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들 기업간의 상호거래의 영향을 제거한 후 자산과 부채 및 수익과 비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유용성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²⁾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황과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투자자와 채권자 등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기업집단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회계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집단 내의 회사간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와 내부거래 등의 현실에서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의 개별재무제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왜곡이나 의도적인 불공정거래나 내부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외증시에 상장하는 경우 기업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으며 주요 국가들도 국제자본시장에서 이같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회계정보로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회계정보의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의 한계로는 연결재무제표만으로는 개별회사의 고유한 회계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정보가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부속자료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덜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연결재무제표가 주된 회계정보로서의 역할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연결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즉, 기업간의 지배, 종속관계가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또는 특수관계인집단에 의한 출자 등 복잡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일경영지배력하에 있는 모든 회사들을 하나의 연결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또 연결에 포함되는 기업집단내 개별회사간에 업종, 결산일, 또는 회계처리방침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난 회계정보는 그 유용성을 잃게 되며, 배당의 계산과 같은 법률

2) 삼일회계법인(1994)과 세동회계법인(1993) 참조.

행위를 하는데에 있어서 연결재무제표는 그 기초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개별재무제표에 비하여 연결재무제표는 복잡하고 이해가 어렵다는 것 등이 한계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기준은 기업간의 연결회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수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법은 기업결합을 한 회사가 결합되는 다른 회사의 순자산을 취득하는 거래로서 다른 교환거래와 같은 기업거래의 한 형태로서 간주하고 취득한 자산과 부채는 취득시점에서의 공정가치로 평가, 기록하며 취득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지급대가는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이다.³⁾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론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대상이 누구라고 보는가에 따라 크게 두가지의 작성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업실체이론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실체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이론이며 여기서의 연결재무제표는 독립된 기업실체의 관점에서 작성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하에서는 지배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및 외부주주등을 포함한 연결실체의 이해관계자들이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특징이 있게 된다. 특히 외부주주지분은 연결실체의 입장에서 연결주주지분의 일부가 되며 이는 지배주주지분과 같은 방식으로 보고되고 외부주주지분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은 외부주주에게 배분된 금액으로 보게되는 것이다. 또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서로 제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제거차액은 지배회사와 외부주주지분에 각각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또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작성이론으로서 지배회사이론을 들 수 있다. 지배회사이론은 연결재무제표가 지배회사 재무제표의 연장으로서 지배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들을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외부주주지분은 지배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부채항목이 되고, 연결손익의 계산시에는 외부주주지분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이 비용으로 분류되게 된다. 또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제거할 때 발생하는 제거차액은 지배회사에 귀속되고 외부주주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처리를 하게된다. 이와 같이 기업을 연결하는 회계처리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기준은 위의 두가지 이론을 모두 반영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⁴⁾

3)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는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이 있다. 지분풀링법은 결합되는 회사가 결합된 뒤에도 각 회사의 자원을 공동으로 유지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단위로 결합된 이후에도 결합전의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결합되는 회사의 소유주지분은 결합된 회계실체내에서 통합되어 비교적 불변인 체로 존속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1993) 또는 세동회계법인(1994)를 참조하기 바람.

4) 기업실체이론하에서의 연결재무제표작성의 주체는 연결실체가 되며 지배회사이론하에서는 지배회사가 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의 목적도 기업실체이론에서는 기업집단에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 되고 지배회사이론하에서는 지배회사주주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된다. 관련회사를 연결함으로써 발생하게되는 연결

본 논문은 문헌연구로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기존의 연구내용들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연결재무제표기준과 준칙에 대하여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파악하고, 개정의 주된 배경 또는 목적을 요약정리 및 분석적 비판을 하였으며 또한 제4장에서는 최근에 IMF에 의하여 요구된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제5장의 결론부분에서는 비록 최근에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기준과 준칙에 대하여 개선방안 등을 논하고 이와는 별도로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에 대한 본 연구자의 견해를 밝히기로 한다.

II.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발표된 연구들은 연결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와,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및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중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인 남상오(1992)와 주인기(1992)의 연구내용은 제4장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이곳에서는 먼저 연결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연결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정종암과 김지홍(1991)은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기 이전의 기간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며 30대 개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재무비율들을 분석한 결과 연결재무제표의 재무비율들이 개별재무제표의 경우보다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실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김지홍(199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의 모든 정보가 개별재무제표보다 불리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 변수들이 있다는 것이다. 즉, 순운전자본비율과 총자산회전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무비율의 경우 연결재무비율이 개별재무비율보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수익성비율은 연결재무비율과 개별재무비율 사이에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레버리지비율의 경우에

당기순이익은 기업실체이론에서는 연결실체의 모든 지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나, 지배회사이론하에서는 지배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투자와 자본계정을 상계제거할 때 미실현손익은 기업실체이론하에서는 상향판매시에는 전액제거후 지배회사와 외부주주지분으로 안분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며 지배회사이론하에서는 이를 지배회사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제거하게 된다.

는 기업실체이론을 사용한 경우와 지배회사이론을 사용한 경우의 차이가 두드러져서 지배회사 이론하의 연결재무비율이 더 악화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의 판별식을 사용한 결과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한 판정이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한 판정보다 더 불리한 판정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들 두 가지의 재무제표가 투자자들에게 서로 다른 판정을 내리게 한다는 것이 이들 두 재무제표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다는 것이며 특히 개별재무제표는 보다 더 낙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권중과 남상오(1994)는 기업상호간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미래의 손실부담가능성이 기업의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계열기업의 이익반응계수는 동일기업집단내 타계열기업들의 채무불이행 확률과 서로 음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동일기업집단의 타계열기업들의 이익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당해계열기업의 이익반응계수가 크다는 것을 관측하여 정보이용자들이 당해계열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기업집단의 타계열기업들에 대한 정보수요가 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즉, 연결이익정보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주식가격평가에 사용되는 요인들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투자자들이 당해계열기업의 미래 이익흐름을 평가함에 있어 동일기업집단 타계열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기존의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가 투자자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전성빈(1994)은 감사받은 연결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는데, 연결이익정보와 연결매출정보는 4월말 전후의 기간동안은 누적초과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결감사보고서일자 전후를 검증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연결이익정보만 일별초과수익률과 유의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관측하였다. 황인태(1995)의 연구는 1992년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2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연결재무제표 공표시 거래량 변동을 중심으로 연결재무제표의 공시가 투자자들이 해당기업의 미래수익률의 확률분포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것에 대한 실증연구이며 연구의 결과 연결감사보고서일에 거래량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으며 이는 연결재무제표의 공시가 시장구성원들에게 유의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거래량과 비기대이익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의 결과, 연결이익의 기대치로서 전년도 연결이익을 사용한 경우가 당해연도의 개별이익을 사용한 경우보다 그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황인태(1995)는 또 회계정책적인 차원에서 연결감사보고서에는 일반투자자들이 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비상장회사나 해외현지법인의 개별기업의 실적이 반영되므로 가능한 빨리 연결재무제표가 공표될 수 있도록 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연결재무제표기준에 대한 연구

이종천과 김문철(1995)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결재무제표기준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배회사이론이 연결재무제표기준을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타당한 이론이라 결론짓고 이를 중심으로 기존 기준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선 기존의 연결기준은 타 회계기준과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결기준하에 허용되어 있는 지분법이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합병회계준칙의 합병차익과 동일한 연결조정대가 각각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는 지분법을 허용하는 개선을 해야하며 합병회계준칙도 연결조정대를 영업권과 같이 상각환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회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연결기준하의 '자기사채'라는 표현은 그 실익이 없고 연결기준에서 투자차액의 정의시 '특정자산과 부채' 그리고 '다른가액'과 '객관적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일관성이 있는 연결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기준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종속회사의 주식거래로 인한 지분율의 증감은 주식의 추가취득과 매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상이한 업종의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과, 연결조정차,대의 상각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사채상환추정손익에 대하여 독립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연결이익잉여금과 연결자본잉여금계산에 대한 규정은 연결과정의 당연한 결과절차에 불과하므로 불필요하며 관련회사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 차입금으로 계상한다는 규정도 삭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전성빈(1995)은 소규모회사에 대한 기준은 예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내부미실현이익의 제거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배이론하에서 안분제거법은 이론적 타당성이나 실무적 편의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부분제거법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종천과 김문철(1995)이 주장한 종속회사 주식거래에 대한 회계규정의 변경은 어떠한 식으로 회계처리 하든 연결자본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므로 그 효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연결조정차,대의 회계처리방법의 개선안에 대하여는 영업권과 특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특정자산의 공정가치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론적인 타당성이 없이 기업의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연결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한 경우 이는 연결회사의 입장에서는 상거래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므

로 연결대차대조표에서도 지급어음계정을 제거하고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전성빈(1995)은 특히 합병 및 연결과 관련된 기업결합회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매수법을 표방하고 있는 현행 합병회계준칙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재고자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공정가치의 산정이 어려우며 합병시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교부주식을 공정시가가 아닌 액면가에 평가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영업권이나 합병차익이 계산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김진수(1998)도 우리나라 합병회계처리의 실무에서 합병회계처리의 기본원칙인 매수법과 그 예외적인 사항⁵⁾들이 혼용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회계정보의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기본적인 입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회계정보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합병회계준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합병회계준칙은 기본적으로 매수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지분풀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합병의 기본조건들을 명시하여 투자자들의 피해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연결재무제표기준 및 준칙의 개정내용 및 분석

1996년 3월에 개정된 연결재무제표기준과 연결재무제표준칙은 그 부칙에 의해 199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들 기준 및 준칙은 199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들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주로 개정된 규정을 중심으로 그 변동사항들을 보고하기로 한다.

1.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개정내용

(1) 연결재무제표기준의 목적

우선 제1조에서 연결재무제표기준의 목적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근거규정을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제6조'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함) 제13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6조'의 규정으로 바꾸었다.

5)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들은 합병회계준칙 제5조에서 허용한 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액의 계산, 제6조에서 허용한 영업권과 합병차익의 개념, 그리고 제7조에서 허용한 이익준비금과 기타적립금의 승계 등이다.

(2) 연결재무제표의 내용

제2조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전과 달라진 것은 없으나 다만 연결재무제표의 양식 사례를 바꾸는 내용만이 포함되고 있다.

(3) 지배, 종속의 관계

종전에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나 이법에 개정된 기준에서는 이를 지배, 종속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 종속의 관계"라 함은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제3항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종전과 같으나 다만 단서조항으로서 종전에는 '주식분포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새로운 규정에서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주식의 분포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1호'는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를 말하고, '제2호'는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이며,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를 말한다.

(4)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종전의 기준에서는 제4조를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라고 규정하여 종속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속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청산중이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경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경우, 전쟁,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각각 금융업과 비금융업 또는 비금융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종속회사,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와 소규모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사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지배, 종속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

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5)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에 관한 특례

새로운 기준에서는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특례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 종속의 관계가 연속적으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회사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차상위 지배회사 및 그 종속회사가 최상위 지배회사의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상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각각 금융업과 비금융업 또는 비금융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인 경우
3.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종속회사인 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한 주식회사의 지배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종속회사이며 한 주식회사는 다른 주식회사의 지배회사에 해당함으로써 지배, 종속의 관계가 순환하는 형태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 종속회사의 수가 최다인 주식회사
2. 종속회사의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규모가 최대인 주식회사

6) *참고: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주식회사
2. 제2조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와 앞에 열거한 사유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가 포함된다)
3. 전쟁,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
4.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각각 금융업과 비금융업 또는 비금융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당해 종속회사

(6) 해외종속회사 등의 재무제표환산

중전의 기준에서는 제7조의 해외종속회사 및 지분법 적용회사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은 단순히 기업회계기준 제10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였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해외종속회사'를 '외국에 소재하는 종속회사'라고 고치고 재무제표의 환산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 자산과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2) 주식취득일 현재의 자본은 취득당시의 환율로 환산하고, 주식취득일 후에 발생한 자본은 발생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다. 다만, 지배권획득일(지분법 적용회사의 경우 "지분법적용회사 해당일"을 말한다. 본조에서 이하 같다)전에 그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지배권획득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할 수 있다. 3) 손익계산서항목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로 환산한다. 제7조2항에서는 또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자본금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의 차이는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채권, 채무의 상계제거

연결회사간의 채권 및 채무의 상계제거와 관련하여 중전의 기준 제14조의4항에 의하면 '연결회사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대손충당금등 평가성충당금과 공사보증충당금등 부채성충당금은 이를 조정하여 환입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새로운 기준에서 이를 '연결회사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대손충당금, 하자보수충당금등은 이를 조정하여 환입한다'라고 개정하였다. 또 연결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유휴자금의 일시적 운용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기사채의 과목으로 기재한다라고 되어있던 5항의 규정은 이번에 삭제되었다.

(8) 종속회사 소유의 지배회사주식

종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의 주식은 연결대차대조표상 종속회사소유지배회사주식의 과목으로 하되 중전의 기준에서는 이를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자본조정에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9) 지분법의 적용

지분법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전의 기준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제17조1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4항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가미하였다. 즉, 외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총액미만인 회사를 제외한 다음의 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배회사와 연결종속회사(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속회사 중에서 제4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본호에서 이하 같다.)가 합하거나, 연결종속회사와 연결종속회사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회사,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각각 금융업과 비금융업 또는 비금융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종속회사가 포함된다. 제4항에서는 피투자회사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투자계정의 금액이 영(0)이하가 되는 경우 지분법적용을 중지하는데, 지분법적용을 중지한 후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지분법적용 중지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분법적용을 재개하도록 되어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이 경우 이익과 손실의 범위에는 투자계정 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에 영향을 주는 피투자회사의 자본변동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기타사항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 이외에도 새로운기준에서는 제23조에서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도록하였으며, 제25조의 연결잉여금계산서의 과목과 범위에서 종래의 수정후기초연결이익잉여금 대신에 기초연결이익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29조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주식사항 중 종래의 주식요구사항이던 연결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을 삭제하였다.

2. 연결재무제표준칙의 개정내용

연결재무제표준칙은 종전의 규정에서 제2조가 삭제되어 그 내용이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이동되었으며 제15조의 전기손익수정손익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삭제되었다. 또 제3조의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최대주주등에 대한 규정은 제2항의 내용 또한 연결기준으로 포함시키도록 개정되었다. 종전의 규정에서 제5조의 내용중 제2항인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시 지배회사의 지분비율이 변동된 경우 증자후 자본중 지배회사가 추가로 취득한 신주식에 귀속하는 지분가액과 추가 취득원가와의 차액은 기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의 내용은 변형되었으며⁷⁾, 제3항의 내용인 '종속회사가 주식배당 또는 유상증자 등을 하는 때에는 지배

7) (제5조 제2항: 주식취득일 또는 지배권취득일 후의 종속회사 자본계정 변동 등)

'종속회사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등(본호에서 '증자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증자등을 한 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에서 증자등을 하기 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을 차감한 잔액과 증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식의 취득원가(주식배당과 무상증자시에는 영(0)으로 한다)와의 차액(이하 "지분변동차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회사의 구주식에 귀속하는 지분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액을 연결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다'는 이번의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채의 상계제거에 대한 내용은 '연결회사간 사채계정의 제거시 당해 사채의 취득가액과 발행회사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최초로 취득한 연결회계연도에는 이를 사채추정상환손익으로 계상하고, 그 이후에는 연결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다'에서 '연결회사간 사채계정의 제거시 당해 사채의 취득가액과 발행회사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사채추정상환손익으로 하여 지배회사지분에 부담시킨다. 다만,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종속회사인 경우에는 지배회사지분과 외부주주지분으로 안분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다.

3. 연결재무제표기준 및 준칙의 개정내용에 대한 분석⁸⁾

(1)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개정내용분석

새로운 기준은 종전의 제1조,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하여 먼저 연결재무제표기준을 제정하는 근거로서 외감법 제13조를 종전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6조에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는 기업회계기준만을 그 근거규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기준이 기업회계기준의 하위규정이 되는 외형적인 체계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증권감독원은 외감법 제13조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개별재무제표의 경우와 같게 부과되고 있으며 그 제 개정절차도 동일하게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는 점과 연결회계정보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외감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회사의 범위를 규정하여 체계화작업을 행하였다. 즉, 종전의 규정은 연결대상종속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 외감법시행령과 상이하여 연결범위에 대하여 실무상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이와같은 종속회사의 범위를 외감법시행령에서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기준은 제7조에서 해외소재 종속회사등의 재무제표 원화 환산 방법을 개정하였는데, 종전의 기준에서는 기업회계기준 제103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에 의하여 제103조의제2항이 삭제되어 원화환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다. 또 종전의 규정에서는 대차대조표는 현행환율로 손익계산서항목은 평균환율로 환산하도록 되었

1.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조정차 또는 연결조정대로 처리한다. 다만, 지배주주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이 배제되거나 또는 자기선택에 의하여 유상증자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결자본잉여금에 가감한다.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8) 이 내용은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에서 증권조사월보 1997년 2월호에 게재한 글을 중심으로 분석, 요약한 것이다.

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중 자산 및 부채는 현행환율로, 자본은 역사적환율로 환산하고 손익계산서항목은 종전과 같이 평균환율로 환산하도록 하였다.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환산함에 있어서 역사적환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종전과 같이 현행환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투자주식과 종속회사의 자본을 상계제거할 때 발생하는 차이를 없애고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연결재무제표기준 제17조1항은 종전에는 자산 60억 미만인 소규모회사에 대한 투자계정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소규모회사는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 종전의 규정에서는 지분법적용 대상회사를 결정할 때 지배회사의 투자주식에 비연결종속회사가 소유한 투자주식도 포함한 지분율로 대상을 결정하였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비연결종속회사가 소유한 투자주식을 제외한 지분율로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대상회사의 축소작업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정보의 중요성과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들고 있다. 즉, 종전에 규정된 대상회사중 소규모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즉, 직전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60억 미만인 회사-는 이번의 개정기준하에서는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자산 6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외감법상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그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금액적 중요성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이유로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20% 이상 5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중 자산규모가 60억 미만인 소규모회사'를 들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지분법 적용회사의 결정시 비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계산할 때 '종속회사의 범위에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해당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의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즉,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라고 규정할 때의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비연결종속회사는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지배회사와 연결종속회사가 합하거나 연결종속회사와 연결종속회사가 합하여...'라고 개정하여 비연결종속회사가 소유한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의 결정시에 제외하도록 하였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대한 이유로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회사는 연결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이 없거나 청산, 소멸 예정인 회사이며 회사정리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와 업종이 상이한 경우 외에는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까지 합산하여 지분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보유용성이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는 또 지분법 적용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서 실무상 어려움도 예측된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기준 제17조제4항 지분법적용의 중지 및 재개조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피투자회사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투자계정과 당해 피투자회사에 대한 순채권액의 합계가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지분법적용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을 고려하여 지분법적용 중지요건을 투자계정금액이 영(0) 이하가 되는 경우로 단일화하였다. 종전에는 또 피투자회사의 이익이 지분법적용 중지기간중 피투자회사의 손실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재개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지분법 적용 재개시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고 다만 피투자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의 범위에 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증감도 포함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물론 자본금과 잉여금의 증감액도 투자계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연결재무제표준칙의 개정내용 분석

준칙 제5조에 규정된 종속회사의 유,무상증자에 대한 지배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서 신주식에 귀속하는 지분가액과 추가 취득원가와의 차액은 연결조정차, 대로 처리하고 구주식에 대한 지분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액을 연결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운 준칙에서는 지배회사와 외부주주간 지분변동액만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회사의 유,무상증자 등으로 그 자본계정이 변동하게 되는데 이같은 지분가액의 변동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종전의 준칙에서는 지배주주의 구주식과 신주식 사이의 지분가액 변동액을 포착하고 보고하는데에 그 초점을 두어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지분변동은 연결조정차 또는 연결조정대로 보고하고 종속회사의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지분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액을 연결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지분가액의 변동액은 변동 당해연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이같이 보고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준칙에서는 이와는 달리, 지배주주와 외부주주 사이의 지분가액의 변동여부에 초점을 두고 이를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준칙에서는 종속회사가 증자 등을 한 때에는 증자 등을 한 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에서 증자 등을 하기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을 차감한 잔액과 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식의 취득원가와의 차이인 지분변동액은 유상증자에 의한 경우에는 연결조정차 또는 연결조정대로 처리하고 지배주주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이 배제되거나 또는 자기선택에 의하여 유상증자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결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하며,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 등에 의한 경우에는 지배회사가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없게 되므로 이를 연

결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지배회사의 추가적인 자금지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결회사간의 사채거래는 연결시에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에 발생하게 되는 사채상환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종전의 준칙에서 단순히 지배회사의 연결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된 준칙하에서는 이를 지배회사의 연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사채발행회사가 종속회사인 경우 지배회사 지분과 외부주주지분에 안분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IV.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논의

1.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가 단순히 지배, 종속관계의 범위를 지분율기준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실질지배력의 존재유무를 파악하여 지배, 종속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지배가 대주주 개인 및 친족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에서는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가 보다 더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대외홍보 및 해외금융 등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라고 볼 수 있으며 그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심관리를 위하여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하여 그룹연결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주요 재벌그룹으로 그 작성이 확대되었다.⁹⁾ 그러나 1997년 12월에 있었던 금융위기의 결과 우리나라와 IMF와의 사이에 체결된 구제금융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IMF가 요구하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도록 되었으며 이 중 하나가 바로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이다. 이는 이와같은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공시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공시의 완전성과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요구된 사항으로서 이같은 회계정보를 통하여 개별회사에 대한 담보권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 보다는 계열기업전체의 수익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¹⁰⁾

2.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에 대한 토론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가 지분율을 기준으로 그 연결범위를 정하는데 비하

9) 삼일회계법인(1993) 참조.

10) 주인기(1998).

여 실질지배력을 그 연결범위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에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회사가 포함되나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모든 회사가 그 대상이 된다. 앞에서 논의한 연결이론을 중심으로 보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이론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이론을 그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지배가 대주주와 그 친족을 포함하는 개인집단을 통한 지배와, 금융 및 상거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형태가 많은 경우에는 회계실체에 대한 회계정보를 보다 더 잘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이같이 기업집단에 대한 회계정보가 보고된다면 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집단 전체에 대하여 위험의 분석이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며 정부나 금융기관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의 수립이나 여신관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집단재무제표에 포함시킬 계열기업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렵다는 점과 계열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집단의 개념이 모호하여 보고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점 및 이같은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국제비교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 등이 그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와같은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에 대하여 남상오(1992)와 주인기(1992)는 서로 비슷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남상오(1992)의 주장에 의하면, 기존의 연결재무제표는 그 의미와 정보유용성이 매우 낮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연결기준에 포함되는 실질지배력기준이라는 개념은 외국의 기준과 달라 연결기준이 일관성을 잃었으며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 또 해외현지법인이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연결재무제표는 그 위상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연결재무제표기준의 연결기준을 개선하고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를 도입하며 이와 아울러 감사제도에도 개혁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연결재무제표기준에서 지분율기준과 실질지배력기준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지분율기준만을 인정하도록 하자는 것과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그 형식은 결합재무제표¹¹⁾의 형식으로 하자는 것, 그리고 연결회계제도하에서는 개별기업을 감사하는 감사인과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같아

11) 남상오(1992)에 의하면, 결합재무제표는 기존의 연결재무제표와 그 근본적인 내용이 같으나 연결기준으로 실질지배력기준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다르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지분계산이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작성이 간편하며, 계열회사간의 회계조작을 방지하고 결합집단으로서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평적인 기업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기업가치의 산정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의 자유수임제도에 의한 감사인의 선임을 배정제도를 도입하여 (또는 혼합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질을 높이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주인기(1992)는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며,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중 특정 개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지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과 이에 대한 감사가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업집단군이라고 반드시 공동운명체는 아니라는 점과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주감사인 개념이 의미가 없다는 점,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과도한 정보의 노출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투자자들 및 회계정보 작성자들에 대한 교육과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기술력 축적되어야 하며, 이같은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남상오(1992)와 주인기(1992)는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이 점진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를 도입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계 특히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의 내용은 대개 재벌기업의 경제적실체가 드러난다는 점과 정부규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재벌기업의 회계조작행위나 분식결산 등 공공거래질서의 문란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를 도입하게 되면 재무구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취약한 기업집단의 경영내용이 드러나게 되어 해외에서의 기재등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V. 결 론

앞에서 연결재무제표나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 등 우리나라의 연결회계정보에 대한 관련 문헌을 살펴보고 최근에 개정된 연결재무제표기준을 검토하였으며 또 최근에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곳에서는 글을 맺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또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에서 개정된 내용 중 먼저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근거를 외감법 제13조에 두게 되어 연결재무제표기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최근의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에 대한 논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또 종래에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였던 연결대상종속회사의 범위

도 외감법시행령을 인용하는 등 체계화작업이 이루어진 것도 바람직한 개선이다. 이는 이종천과 김문철(1995)의 주장과 일치하는 개선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진다.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 제103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해외소재 종속회사등의 재무제표환산작업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적용환율의 명시화도 회계처리상에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소규모회사는 지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지분법적용 대상회사를 결정할 때 비연결종속회사 소유분의 투자주식은 제외하기로한 점, 그리고 지분법 적용회사의 결정시 비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계산할 때 종속회사회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점 등은 정보의 중요성과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기준에서 지분법 적용중지의 조건을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을 고려하여 투자계정금액이 영(0) 이하가 되는 경우로 단일화하는 작업을 하고 지분법 적요의 재개시점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되 피투자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의 범위에 자본금과 잉여금의 증감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 연결재무제표준칙의 개정에서 종속회사의 유,무상증자시 발생하는 지분가액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배주주와 외부주주 사이의 지분가액의 변동여부에 중점을 두고 보고하는 체제로 개선되었다. 비록 이종천과 김문철(1995)이 이를 주식의 추가취득과 매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준칙의 규정은 전성빈(1995)의 주장과 같이 연결자본총액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효익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준칙에서는 연결회사간의 사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사채상환손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채발행회사가 종속회사인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지분과 외부주주지분에 안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종천과 김문철(1995)이 주장한 내용인 '사채의 상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종천과 김문철(1995), 전성빈(1995), 그리고 김진수(1998) 등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합병회계준칙과 연결회계기준과의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회계처리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합병회계처리준칙의 기본원칙이 매수법인 경우를 고려한다면 매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의 평가에 대한 기준 등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이번의 개정작업에서는 연결조정차,대의 회계처리방법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영업권과 특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고 특정자산의 평가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하여야할 것이다.¹²⁾

12) 이에 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즉, 국제회계기준 제22호 기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공인회계사회 1996 참조) 이 중 몇가지를 요약하면, 우선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식별가증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회사의 의도가 중요한 요소이어야 하며, 시장성유가증권은 시장가치로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은 추정가치로 평가하며, 받을채권의 평가는 미회수가증액과 회수비용을 차감하여 할인한 가액, 채고자산은

2.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 논의에 대하여

남상오(1992)와 주인기(1992)의 주장과 같이 재벌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환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지만 현재 이러한 기업집단의 실체를 알 수 있는 회계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공시되지는 않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들의 경제력 집중도는 최근 그 정도가 많이 완화되고 있으나 이들 기업집단은 상호간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금융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 소유구조 또한 동일인과 그 친족 및 계열회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영권의 행사가 소수의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다. 또한 그동안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결재무제표기준 또한 여러 측면에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문제와는 별도로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들어 이론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외국에서 선례가 없는 재무보고서라는 점, 그리고 기업집단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그 주된 이유들이었다. 그러나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이론적 타당성은 남상오(1992)의 주장과 같이 기업실체의 공준, 기업실체이론, 경제적실체의 중요성 및 정보의 유용성과 목적적합성의 관점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김권중과 남상오(1994)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분석의 결과도 있는 것이다. 외국의 선례가 없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이 심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타당성은 없어진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은 현재의 IMF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그 성격과 작성의 목적 등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기업결합회계의 주된 이론 주에서 지배회사이론이나 기업실체이론 또는 별도의 이론의 선택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집단의 범위에 대한 개념의 정의라든가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작성형식 및 작성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 이에선 기존의 합병회계처리기준과 연결재무제표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이다. 기업의 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 발생하는 많은 유사한 사항들은 유사한 회계처리가 행해져야 하고, 또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와 기존의 연결재무제표의 위상문제나 그 적용범위의 문제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순실현가능가액에서 합리적인 이윤을 차감한 가액, 토지와 건물은 사용용도에 따른 시장가치, 무형고정자산은 추정가치, 그리고 매입채무는 단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원칙의 제,개정작업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회계정보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어야 한다. 이미 앞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결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한 바 있으며, 일반 투자자들은 기업집단에 대한 올바른 회계정보를 통하여 이들 기업집단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정부도 이들 기업집단의 실체를 파악하여 여신관리와 조세제도 등 여러 가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권중, 남상오, '연결회계정책 정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분석', 회계학연구, 제18호, pp.19-45, 1994. 7.
- 김지홍,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정보의 차이', 회계저널, pp.11-26, 1995. 12.
- 김진수, '합병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소고', 공인회계사, pp.44-45, 한국공인회계사회, 1998. 1.
- 남상오,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발표논문집, 한국회계학회, 1992. 9.
- 삼일회계법인, 연결재무제표의 이론과 실제, 1994
- 세동회계법인, 연결재무제표해설, 1993.
- 이만우, '우리나라 연결회계제도의 개선방안', 회계학연구, 제14호, pp.251-267, 1992.
- 이종천, 김문철, '우리나라 연결기준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과 개선방안', 회계저널, pp.137-155, 한국회계학회, 1995. 6.
- 전성빈,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의 정보효과', 회계학연구, 제19호, pp.51-71, 1994.
- 전성빈, '우리나라 연결기준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과 개선방안: 토론', 회계저널, pp.156-163, 한국회계학회, 1995. 6.
- 정종암, 김지홍,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담당자들의 인식 및 연결재무정보의 질적 차이에 관한 분석', 경영학연구, 제2호, pp.127-155, 1991.
- 주인기,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도입방안', 발표논문집, 한국회계학회, 1992. 9.
- 주인기, 'IMF하에서 국제회계원칙에의 접근방안',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pp.19-25, 1998. 1.
- 증권감독원, '개정 리스, 건설업회계처리기준 및 연결재무제표기준해설, 증권조사월보, pp.57-91., 1997. 2.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회계기준번역서, 한국공인회계사회, 1996.

황인태,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거래량정보를 이용하여', 회계학연구, 제20권 제2호, pp.59-75, 1995. 6.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Discussion Memorandum, 'An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 and Purchased Intangible', 1976, para. 11.